

붙임자료

**- 2017년 11월 (제45차)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목 차

1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세칙 전부개정규칙안	1
2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세칙 제정안	7
3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4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	30
5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35
6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43
7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8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9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	60
10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63

1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세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총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총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총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총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총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총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총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총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총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총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로부터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 구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구청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

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구청장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구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

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세심의위원회에 명단공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개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채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채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이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기간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을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4조제4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⑮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략) <u><신설></u>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소속기관이 장은 임신 공무원 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u>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소속기간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u>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u> <u>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u>
제18조(연가일수) <u>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 <u><단서 신설></u>	제18조(연가일수) ----- -----. <u>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u>

직기간 전부로 한다)

2.·3. (생략)

② (생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④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 ⑨ (생략)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
하고 같다) · 사산의 경협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공무원-----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 유산

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5. (생략)

⑪ ~ ⑬ (생략)

<신설>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⑪ ~ ⑬ (현행과 같음)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 참고자료

관계 법령 등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18.>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직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1.1.13.>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함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13.>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생략)

④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별표 3] <개정 2017.5.1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5.4.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생략)

⑩ (생략)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5.18.>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7.5.18.>

4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

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4.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5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이”를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아동이”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구청장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민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6.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월 5일을 아동 놀이의 날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적이고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3. 놀이활동을 촉진할 전담 인력 배치 및 양성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

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 조치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아동권리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호관은 구청장에게 문서로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관계자나 관계기관장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상담 및 구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중전의 제16조) 제1항 중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 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u>아동이</u>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u><신 설></u></p>	<p>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u>“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u></p>
<p>제3조(<u>구청장의 책무</u>) (생략) <u><신 설></u></p>	<p>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구민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u></p>

<신 설>

<신 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조제목 개정 2015.5.14.)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제9조 ~ 제18조 (생략)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

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6.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제14조 ~ 제2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21조(기존의 제16조) ①-----

-----팀장이-----.

이 된다.

<신 설>

<신 설>

제9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월 5일을 아동 놀이의 날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적이고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3. 놀이활동을 촉진할 전담 인력 배치 및 양성

<신 설>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아동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 조치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아동권리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③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아동 권리보호관은 구청장에게 문서로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관계자나 관계기관장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상담 및 구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구성) ① -----

-----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평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이하인 먼지
 -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구민의 참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종합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구청장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주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을 초과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mu\text{g}/\text{m}^3$ 초과) 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시 발령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구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구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민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 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안 및 결정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제안 및 발굴
3.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피드백
4.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구민 거버넌스 활동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제11조 관련)

구 분		등 급 ($\mu\text{g}/\text{m}^3$)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0~30	31~80	81~150	151이상 (주의보 발령)
	초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0~15	16~50	51~100 (90이상 주의보 발령)	101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제약없음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제약없음	제약없음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민감군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를 말한다.

별표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제11조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 상	단 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민감군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나.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p>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p> <p>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p> <p>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 권고)</p> <p>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p> <p>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p> <p>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 활동 자제 홍보</p>	<p>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p> <p>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p> <p>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p> <p>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p> <p>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p> <p>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p> <p>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p> <p>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p>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p> <p>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 생활 유지)</p> <p>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p> <p>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p> <p>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p> <p>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p> <p>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할 실외 활동 금지 홍보</p> <p>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p> <p>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p> <p>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p> <p>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p> <p>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p> <p>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p> <p>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p> <p>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7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73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72조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이 결정 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u>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u>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p> <p>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u>다음</u>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u>관계공무원 중 소관업무 담당 국장, 부동산 관련 담당부서장 등 5명 이내</u></p> <p>2. <u>제3조에서 정한자중 10인 이내</u></p>	<p>제1조(목적) -----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제25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74조</u>----- ----- ----- -----.</p> <p>제2조(구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이하 “<u>영</u>”이라 한다)제74조제3항에 따라 <u>다음</u> -----.</p> <p>1. <u>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u></p> <p>2.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p>

제3조(위원위촉) 위원은 지역의 사

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무 서 평가 담당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3.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부동산중개업자
6.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하여 전문학식이 있는 사람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8. 기타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 ① (생략)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삭 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영 제73조제1항 -----

-----.

<삭 제>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삭 제>

<삭 제>

③ 제2조-----

--.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는 영 제72조를 준용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 (생략)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부결된 것으로 본다.

8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를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8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3조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영 제17조 중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서를”을 “시안을”로, “협의·확정하여야 한다”를 “협의를 한 후 확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추진을”을 “사용 추진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생활화”를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5명 이상”을 “8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적용범위) ----- ----- ----- ----- -----, 「<u>도로명주소대장규칙</u>」 및 「<u>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u>」에 ----- -----.</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u>제8호서식</u>의 건물</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 <u>제14호</u>-----</p>

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의 업무담당부서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

-----.

② ----- 서울특별시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영 제17조 중 “해당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다.

1.·2. (생략)

② (생략)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
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계획서를 작
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를·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
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
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
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 20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안을 --
----- 협의를한 후 확정할
수 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

① ----- 사용 촉진
을 -----

-----.

1.·2. (현행과 같음)

3. -----
--- 사용 -----

4. -----
사용 -----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4. (생략)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생략)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3. (생략)
- ③ (생략)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 8명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중 -----

-----.

1. ----- 관계 공무원
2. ----- 또는 -----
- 3.·4.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질병 -----
- 2.·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9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성북동 청소년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독서실 운영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쉼터 제공 	성북로6길 8-1
동선동 청소년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독서실 운영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쉼터 제공 	아리랑로 27-3
월곡 청소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독서실 운영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쉼터 제공 	화랑로13가길 110
장위동 청소년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독서실 운영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쉼터 제공 	장위로40다길 10
석관동 청소년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독서실 운영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쉼터 제공 	화랑로 214
성북 청소년문화공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체험 및 활동 지원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쉼터 제공 	동소문로26다길 8-2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사랑방 기능 제공 ·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공간 운영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쉼터 제공 	솔샘로 107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제8조 관련)

구분	대 상	사 용 료(원)	적용기준
독서실 (입실료)	청소년	500	퇴관시까지
	성 인	1,000	
시청각실	고교생 이하	5,000	1시간
	대학생 및 성인	10,000	
다목적연습실	고교생 이하	5,000	1시간
	대학생 및 성인	10,000	
동아리실	고교생 이하	2,000	1시간
	대학생 및 성인	4,000	
강의실	고교생 이하	2,000	1시간
	대학생 및 성인	4,000	
음악연습실	고교생 이하	2,000	1시간
	대학생 및 성인	4,000	
비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및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10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코아루센타시아 내 문화시설란 다음에 돌곳이 생활예술문화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돌곳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제3조와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성북예술 창작센터	전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 (성북동1가 74-1)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돈암동 51-49외)
코아루센타시아 내 문화시설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47 코아루센타시아 내 북층 (129호, 226호) (동선동1가 121-6)
돌곳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